

<진정한 보배>

하루는 송(宋)나라 농부가 밭갈이를 하다가 옥덩이를 줍게 되어, 이를 재상 자한(子罕)에게 바쳤습니다. 자한이 받지 않자, 농부는 “상공의 치세에 감명 받아 진상하는 보옥이옵니다. 어찌하여 내치십니까.” 라고 말하며 거듭 받아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자한은 이에 “그대는 옥을 보배로 삼고 나는 받지 않음을 보배로 삼으니, 만일 내가 그것을 받는다면 오늘 모두의 보배를 잃는 셈이네.” 라 답하였습니다.

자한사옥(子罕辭玉).

자한이 옥을 마다하였다는 이야기는 일찍이 다산(茶山)의 목민심서에 소개될 정도로 후세의 귀감이 되어왔습니다. 관료의 청렴함이 백성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이 일화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현 시국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한의 경우처럼, 우리들도 이따금씩 직무 수행 과정에서 귀중한 선물을 제의받습니다. 목전에 옥을 두고 ‘받지 않음을 보배로 삼는’ 것은 적지 않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지난 가을, 법무관으로서 제가 마주한 경험 또한 그러한 결의를 시험받은 경우였습니다.

법률 사무에 종사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직역인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제가 배정받은 첫 임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용인지소였습니다.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대리해주는 기관이 바로 이 곳입니다.

“계시요?” 마른 하늘에 가을비가 내리던 10월의 어느 날, 왜소한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공단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희끗한 머리칼에 갈색 가디건을 입은 품이 낙엽처럼 세월에 바랜 분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 사이로 여전히 고우셨지만, 굳게 다문 입술 사이에는 호소할 곳 없는 억울함이 배어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내 오늘 마음 단디 먹고 왔습니데이.” 대화는 무거운 언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옆 공장에 불이 나서 우리 집까지 몽땅 타버렸는데, 공장 보험사에서 보상을 못 해준다고 안 합니까. 홀몸 늙은이라고 업신여기는 게 분명하니 어

데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저는 할머니께 차를 덥혀드렸습니다. 잔을 받아 든 어르신은 비에 젖은 손을 녹이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연 인즉슨 이주일 전에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할머니의 집 베란다에 옮겨 붙었는데, 마침 집을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베란다는 물론 거실의 상당부분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의적인 차원의 배상은 있을 줄 알았지만, 공장 측 보험사에서는 내부 규정을 들어 300,000원 이상의 배상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돌봐주는 가족도 없이 근근이 살아가는 할머니는 밤마다 앓았다고 했습니다.

“먼저 떠난 자식 놈이 만들어 주고 간 장롱이 마루에 있었어요. 그 머스마 옷가지며 사진을 거기 다 모아 놔는데…….”

집을 비운 사이 벌어진 잠깐의 화재로, 할머니는 집은 물론 방안에 담긴 추억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의 그을린 기억에 이르러 사무실에는 정적만이 맴돌았습니다.

이 분을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법무관 임관 이후 6개월간 사건을 직접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의 제한을 받고 있었기에, 직접 대리를 제외한 모든 법률적 절차를 지원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할머니, 현장 사진 좀 가져다 주이소. 우리 한 번 해 봅시데이!”

“변호사님 참말인가예?”

“하모, 참말이지예!” 경상 방언을 따라 호언하니 어르신의 눈주름이 웃음기로 번졌습니다. 웃음 속에는 할머니의 고향내음과 아들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재 사진을 받아 든 날, 용인 지소에는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장 안에 집을 잃은 한 노인의 설움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설움은 보험사의 비정함과 맞물려 참혹하였습니다. 법률상 제한으로 인해 소장 작성자가 직접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 현실, 결국 법정 앞에 홀로 서야 할 할머니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없이도 그 마음이 재판부에 와 닿아야 했으므로, 글은 쉽사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산통을 겪어 소장이 다듬어진 다음날 아침, 저는 어르신을 배웅하며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오면 언제든지 문의 하이소. 아셨지 예?” 어르신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높아만 보였던 법원의 담

은 이렇게 할머니를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르신은 2주에 한 번 꼴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있어서 외롭지 않은 싸움이라며 할머니의 입가에는 연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 내 조정(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중국적인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절차)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모양이었습니다. 고령의 노인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중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한 저는, 즉시 피고 측 보험사에게 연락하여 원고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 아래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할머니께서 혼자서 아님을 인식하자 피고 역시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조율 의사가 있다’며 한 발 물러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맞물려, 최종적으로 할머니는 3,000,000원의 위자료와 함께 건물의 보수금까지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초에 피고로부터 제시된 300,000원의 10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은혜를 어찌…….” 어르신은 감읍하셨습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잠깐 따라와 주실랍니까?” 낯익은 곳에서 나눌 대화가 있다는 말씀에 어리둥절한 채, 어르신에게 손을 잡힌 저는 공단 건물 외부로 나왔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어르신은 주머니를 뒤적이며 운을 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받지도 않고 무일푼으로 도와주시는 게 고마워서 그래예…….”

할머니는 이내 주머니에 있던 봉투를 제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이게 뭔데예?”

“작은 성의니까 다른 말 말고 그냥 받아요. 그리 안카른 내가 도움 받고 염치를 모르는 이가 된다 아닙니까.”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만 원짜리 지폐 예닐곱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들은 할머니의 비좁은 손지갑 안에서 어제까지 쪽잠 자던 모양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거실 안에서, 한 장 한 장 지폐를 꺼내는 어르신의 뒷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뭉클한 마음을 다잡고 저는 웃어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데 손님이라도 맞으면 요긴하게 쓰려고 뭉쳐놓은 돈 같은 데……. 꼬깃꼬깃한 것이?”

“선생님 꼭 한 번 우리 집 오시오. 은인 대접을 그걸로 안 한다면 달리 어찌 쓰겠능교?” 어르신은 결심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듯 했습니다.

“맞제? 할머니 보배 아잉교, 이 돈이. 다시 잘 접어 넣어 두이소. 요즘 이런 쪽에 나라 법이 지엄한 거, 알고 있지예?”

할머니는 안타까움에 발을 구르셨습니다. “구해준 분께 마음의 선물을 막는 나라 법이 시상 천지에 어디 있는교?”

저는 어르신의 손을 잡아드리며 나지막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제가 그럼 다른 마음의 선물을 받아도 되겠심니꺼?”

“다른…마음의 선물예?”

두 시간 후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책상 한 편에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담은 할머니의 편지가 놓였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아 뻘뻘한 서체로 서툴게 적어 내려간 손편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도움으로 세상이 아직 따뜻한 것을 알고 갑니다…….’

순간의 기지로서 저는 다른 내용물이 담긴 선물을 받았지만, 여운은 훨씬 크게 남았습니다. 그 날 저는 작은 이익을 사양하고, 할머니의 마음을 보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법률 구호의 인연으로 저를 스쳐간 많은 이들의 편지가 이 안에 숨 쉬고 있습니다. 나이든 어르신의 지긋한 필체부터 신혼부부의 아기자기한 손글씨까지 외형은 다양하지만 그 모두가 단 하나, 대가를 받지 않는 ‘내리도움’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내리도움은 금전적인 보답을 바라지 않으므로, 이들의 편지는 돕는 이의 청렴함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인더에 자신의 향취를 남긴 의뢰인들은 공단의 도움에 보답하고자, 그들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이 마음은 때로는 시원한 음료수나 따뜻한 캔 커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청탁

금지법의 시행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선물은 그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거절하는 것이 공직 사회의 흐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직무관련성이라는 가변적 기준을 토대로 획일적인 재제를 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마음 그 자체를 보배로 여기게 된 것은 청탁금지법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청렴한 태도로 의뢰인을 대하자 언제부터인가 저에 대한 선물은 편지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로 받은 다과는 금방 없어지지만, 편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내는 세월이 종이색이 바래고 잉크가 얼어져도, 안에 담긴 마음만은 기억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끝에서, 저는 때 묻지 않은 젊은 날의 열정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할머니를 뵈던 첫 날처럼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오늘의 비는 한여름의 녹음을 머금어 더욱 짙고, 생동합니다. 지금쯤 그슬린 안채도 수리되었을 것이고, 여름비를 맞은 할머니의 마음에도 새순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어르신이 소중히 모았던 돈을 고사했던 추억에 잠겨, 농부의 옥덩이를 사양한 자한을 떠올려봅니다. 백성이 주는 사랑을 진정한 보배로 삼고 이에 청렴으로 보답한 공직자의 몸가짐. 그 마음은 2,500년의 세월을 지나, 어느새 저와 맞닿아 있었습니다.